

서울중앙지방법원
공 판 조 서

제 1 회

사 건 2006고단 2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
관 사 조 귀 장

기 일 : 2006. 7. 4. 14:30

장 소 : 제522호 법정

법원 주사보 임 석 출

공개 여부 : 공 개

고지된

다음 기일 : 2006. 8. 17. 14:00

피고인 김 명 호

출석

검 사 이 상 진

출석

관 사의 인정신분

성 명: 김 명 호
주민등록번호: 공소장 기재와 같음
직 업: "
주 거: "
본 적: "

위 등본입니다.
2006년 7월 10일
서울중앙지방법원
법원주사보 임 석 출



관 사(피고인에게)

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

검 사

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 진술

관 사

피고인에게 모두진술의 기회를 주다.

피고인

2006. 6. 30.자 서면에서 밝혔듯이 제3자에 의한 고발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을 구합니다.
그리고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.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.

관 사

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

검 사

2006. 7. 10

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신문

피고인

공소사실 제1.항 나.의 '2005. 8. 2.경 부터'가 아니라 '2005. 9. 28.경 부터'이고, '서울고등법원 정문'이 아니고 '서울고등법원 동문'입니다.

그 외에 공소사실 제1.항의 글귀 등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나, 글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. 제2.항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
관 사(피고인에게)

문 : 공소사실 제2.항이 모르는 내용이라는 것인가요,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.

답 :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고, 2006. 4. 6. 신문시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고 신문하였습니다.

문 : 직무유기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.

답 : 고등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관 사

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

증거관계 별지와 같음(검사)

관 사

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

관 사

변론 속행

2006. 7. 4.

법원 주사보

임 석 출



관 사

조 귀 장



2006. 7. 4.